

22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업무점검결과 및 개선명령

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개요 ▶

- 연혁
 - '94. 02. 28 : 협회 설립
 - '05. 11. 09 :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
- 조직
 - 회장 : 이은
 - 이사회 / 사무국 : 이사 7명, 감사 1명 / 직원 2명

I. 점검개요

- 점검기간 : 2022. 12. 12. (1일)
- 점검반 :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체희각 사무관, 이소훈 주무관
- 점검내용 : 신탁 관리, 조직 관리 및 운영, 회계 및 자금 관리, 업무개선명령 지적 사항 이행상황 등

II. 점검결과

□ 단체현황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비고
회원수	3	8	8	
사용료	13	10	40	
예산	176	122	162	수입기준

□ 업무점검 결과 (지적사항)

분야	시정사항	권고(통보)사항	계
1. 신탁 관리	2	-	2
2. 조직 관리 및 운영	1	-	1
3. 회계 및 자금 관리	-	-	-
4. 기타	-	-	-
계	3	-	3

III. 분야별 점검결과

1. 신탁 관리

1) 저작권법 상 의무공개 사항 준수 필요

○ 현황 및 문제점

- 「저작권법」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관리하는 “저작물등의 목록”과 “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”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.
- 동 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위 “관리 저작물등의 목록”에 “① 저작물등의 제호, ② 저작자, 실연자(實演者)·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,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, ③ 창작 또는 공표 연도, 실연 또는 고정(固定) 연도, 제작 연도”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, 동 법 시행령 제51조에는 위 “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”를 “④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, ⑤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”의 정보로 정하고 있음.
- 그런데 한국영화제작가협회(이하 ‘영제협’)는 위 공개목록 중 “저작물등의 제호”만을 공개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정보(②~⑤)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, 동 공개의무 위반사항은 「저작권법」 제14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.

[참고1] 영제협의 저작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공개현황 일부

NO	영화제목	NO	영화제목
1	YMCA 야구단	31	소년은울지않는다
2	가위	32	속물들
3	개같은날의 오후	33	아이스케키
4	걸스카우트	34	안녕형아
5	걸어서 하늘까지	35	여린신부
6	공동경비구역 JSA	36	여교수의은밀한매력

○ 개선사항

- 「저작권법」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“저작물등의 목록”과 “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” 공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기타 「저작권법」 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 (시정사항 / 이행기간 : 2023.10.31.)

2) 관리수수료 실질요율 결정절차 개선

○ 현황 및 문제점

- 저작권신탁관리업자(이하 '신탁단체')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관리수수료 규정에 의거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부터 취득하여야 함.
- 대다수 신탁단체의 관리수수료 규정을 살펴보면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요율 이내에서 신탁단체 내 의사결정을 진행할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.

[참고2] 신탁단체 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

[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사용료 관리수수료 규정]

제2조(관리수수료) 음실련의 관리수수료율은 이용료의 20%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상호관리계약, 해외유통계약, 기타 특약 등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%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.

[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]

제2조 (관리수수료) ①위탁자가 재단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뉴스저작물의 이용자(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, 이하 같다)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15% 이내로 하고,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은 위탁자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하되, 위탁자와 재단은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[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관리수수료 규정]

제2조(관리수수료)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 유형에 따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사용료규정 제4조, 제5조의 재방송료, 네트방송사용료 : 사용료의 5% 이내
2. 기타 사용료 : 사용료의 10% 이내

- 한편 영제협은 관리수수료 규정은 30%이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, 실제로 영제협은 방송, IPTV 등에서의 신탁저작물 전체사용의 경우 10%, 방송에서 신탁저작물 부분사용(클립)의 경우 20%의 관리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.
- 그러나 영제협의 정관 및 관리수수료 규정 내에서 관리수수료 실질요율을 결정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서면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음.

[참고3]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리수수료 규정

제2조(관리수수료) 제협은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다음에 정한 요율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.

1.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30% 이내
2. 영화저작물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활동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 중 민·형사상의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30% 이내

제3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과거 수수료 요율변동을 변경할 때마다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벗어나고자 2000년대 중후반 신탁단체들의 관리수수료 규정을 개정하여 명목요율을 정하고, 그 명목요율 이하라면 승인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명목요율과 실행요율을 구분하도록 구조를 개편하였음.
- 명목요율 이내에서 신탁단체의 재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발휘하여 수수료를 유연하게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으나, 실행요율을 적용하는 절차가 명확하여야 신탁단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.

○ 조치 필요사항

- 영제협은 관리수수료 규정에서 실제로 적용할 관리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, 해당 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할 것(시정사항 / 이행기간 : 2023. 12. 31.)

2. 조직 관리 및 운영

1)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운영 개선

○ 현황 및 문제점

- 영제협은 총회,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주요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, 상기 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소집통보에 관한 사항,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, 의결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.
- 다만, 정관에서는 각 의사결정기구에 따라 그 사항을 아래 [표1]과 같이 달리 정하고 있거나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[참고4] 정관에서 정하는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

구분	소집 통보	회의록 보관	회의록 공개
총회	7일 전 통지	날인 후 보관	별도 정함 없음
이사회	7일 전 통지	날인 후 보관	별도 정함 없음

- 영제협은 총회의 경우 정관에서 명시하는 소집 통보 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나, 이사회회의 경우 소집된 이사회 당일에 차기소집일을 정하고, 구체적 안건 전달 여부는 관리하지 않았음.

[참고5] 총회 안건 송부 및 개최

구분	연번	회의명	소집 통보	개최일
총회	1	26차 정기총회	2019.01.24	2019.02.27
	2	28차 정기총회	2021.02.08	2021.02.26
	3	29차 정기총회	2022.02.03	2022.02.25
	4	임시총회 (온라인)	2022.10.14	2022.11.11

- 소집통보는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. 따라서 소집절차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정해놓지 아니하면, 일부 위원을 배제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위원회 개최, 충분한 안건 검토 없이 일부 의견에 따라 진행되는 회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.
- 회의록 관련하여 총회 회의록은 정관 제50조에 정하는 출석 이사 2인이 기명날인 후 보관하고 있지만, 이사회 회의록은 날인 후 보관하고 있지 않음.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 제4항에서 이사회, 총회의 안건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 영제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, 이행시기가 비정기적이며 게시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.

○ 조치할 사항

- 영제협은 ① 정관상 규정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(시정사항 / 이행기간 : 즉시), ② 이사회 회의록을 날인 및 보관할 것이며(시정사항 / 이행기간 : 즉시), ③ 정관상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을 적시(이행 기간 포함) 및 이행하여 의사결정 기구 운영을 개선하기 바람(시정사항 / 이행기간: 2023.12.31.)

3. 회계 및 자금 관리

-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

- 해당사항 없음